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■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 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 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중대본
기준	■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▸ 전국: 500명 미만 ▸ 수도권: 250명 미만	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 전국: 500명 이상 ▸ 수도권: 250명 이상	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 전국: 1,000명 이상 ▸ 수도권: 500명 이상	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 전국: 2,000명 이상 ▸ 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■ 방역수칙 준수	■ 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행사 금지
집회	■ 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1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유흥시설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, 나이트 8㎡당 1명)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(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제한	■ 22시이후 운영제한	■ 22시이후 운영제한 -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
	■ 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(1~4단계)			
콜라텍 무도장	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10㎡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제한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홀덤펍 홀덤게임장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 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제한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2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식당 카페	■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 (1~4단계)	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■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(3~4단계)	
노래(코인) 연습장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제한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목욕장업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실내체육시설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체육도장, GX류 4㎡당 1명)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체육도장, GX류 6㎡당 1명) 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 -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	■ 22시이후 운영제한
		■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제한(권고)	■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■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 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 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■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■ 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	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3그룹 시설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학원	■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	■(관악기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			
	■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			
영화관 공연장	■좌석 띄우기없음	■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		
		■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	■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독서실 스터디카페	■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	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결혼식장	■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친족만 허용
장례식장	■빈소별 4㎡ 당 1명	■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당1명	■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1명	■친족만 허용
이미용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놀이공원	■입장인원 제한×	■수용인원의 70%	■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워터파크	■입장인원 제한×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오락실 멀티방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상점 마트 백화점	■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	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카지노 (내국인)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PC방	■좌석 띄우기없음	■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제한

기타 시설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■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■무관중 경기
	■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	■수용인원의 20%	■무관중 경기
박물관·미술관 과학관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
실외체육시설	■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~4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숙박시설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전 객실의 3/4운영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전 객실의 2/3운영
파티룸 (공간대여업)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		
도서관	■수용인원의 70%	■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
키즈카페	■시설면적 4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전시회·박람회	■시설면적 4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마사지업소 안마소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4단계)		
종교시설	■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■비대면
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학교	■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(1~2단계)		■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■원격수업
	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			